
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보도설명자료 | | |
| | 배포일시 | 2022. 4. 25.(월) / 총 3매(본문3) | |
| 담당 부서 | 첨단자동차과 | 담당자 | ·과장 박문수, 사무관 신현성, 주무관 이동우 ·☎ (044) 201-3848, 3849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국토교통부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법·제도를 완비한 바 있고, 레벨4 자율주행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 주요내용 (동아일보 등, '22.4.25) >

◆ 자율주행차, 규제 정비 속도내야

-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등

□ 언론에서 보도한 ‘레벨3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’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정('19.4),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*('19.12) 및 보험제도('20.4)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·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.

* 현재 최고속도를 60km/h로 제한한 유럽·일본 등과는 달리,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

○ 이에 따라,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.

<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차 제도 현황 >

| | 제도현황 | 주요 내용 | 우리나라 상응 법·제도 |
|----|---|---|---|
| 미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('16.9) · 연방 자동차 안전규칙 개정('22.3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율차 시험운행 허용 · 자율주행차 충돌기준 일부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시운행허가에 해당 · 시범운행지구 적용 중 |

| | 제도현황 | 주요 내용 | 우리나라 상응 법·제도 |
|----|---|--|---|
| 독일 | · 레벨4 실용화를 위한 자율주행법 제정('21.5) | · 무인 자율주행차 허용 | ·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에 해당 · 무인차 임시운행 허용('21.3) |
| 일본 | ·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완료('19.5) ·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공포('20.3) | · 레벨3 제도 정비 | · 「도로교통법」 개정('21.10월) · 「자동차규칙(안전기준)」 개정('19.12) |
| 한국 | · 레벨4 실용화를 위한 「자율주행 자동차법」 제정('19.4) ·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운영('16.2~) ·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개정('20.4) ·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('19.12) ·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('21.10, 「도로교통법」 개정) | · 시범운영지구 내 유상 여객·화물운송 서비스 허용, 무인차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일부 면제 · 자율차의 도로운행 허용 ·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·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제작자의 자기인증 기준 ·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시 휴대폰 사용, 영상장치 조작 등 허용 | |

□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바가 없으며, 레벨4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*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판매·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없으며, 주로 시험운행이나 제한된 구역 내 서비스 허용 중

○ 해당 기사에서 밝힌 바와 달리,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,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.

* (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)
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('21.3), 현재 5개 기업·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

- 이에 더해,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통한 **유상 여객·화물운송 서비스**가 허용되고,
 - 무인차 운전자 관련장치 등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**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이 면제**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“**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.0**”을 '21.12월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신현성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